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00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 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정비

□ 개정안은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삭제하고,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권면직 요건에서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며,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완화하는 등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28조(직권면직) ① ----- ----- -----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삭제>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삭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	6. -----세 차례-----

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¹⁾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해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하였음.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본 법과 달리 직권면직 사유에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전직시험의 경우에도 세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

1) 「군무원인사법」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군무원 역시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보장의 원칙³⁾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인사관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⁴⁾로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규율을 두고 있는바, 국가공무원과 직권면직 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1991. 5. 31.> (개정이전: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삭제 <1991. 5. 31.> (개정이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군무원인사법」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무원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군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관리, 군수지원, 탄약 및 무기 관리, 정비 업무 등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의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개선 의지도 직권면직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근무태도 개선 의지를 제외하고 직무수행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다만 군 조직은 계급과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근무태도 또한 조직 운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바, 현행과 같이 근무태도를 별도의 판단요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완화하는 사항은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직시험 제도는 군 조직의 인력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사법」에서 장교가 2회 진급선발에서 탈락한 경우를 전역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⁵⁾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군 조직의 인사운영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군무원의 신분보장 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양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직권면직 사유를 정비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절차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5)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